

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(2022.8.18.부터 시행)

□ 제도 개요

- (개요) '21.8.1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제18조의5에 따라 **측정대행업자**는 시료채취, 측정결과, 계약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
- (입력기한) 현장 여건 및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**15일 이내**에 입력
- (제재조치)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 **과태료 부과**
- (시행) '22.8.18.부터 시행

<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>

법 제18조의5(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1.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
2.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
3.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법 제35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의4.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시행규칙 제17조의7(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
1.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
2.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·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
3.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